

자퇴

- [제적](#)의 한 종류로 스스로 결정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것
- 자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
- 학칙 제27조

신청 절차

1. HY-in (로그인)
2. 상단 신청 메뉴 선택 > 학적변동 > 자퇴 신청 (클릭)
3. 내용 입력 후 저장
4. 신청내역 출력(자퇴원서)
5. 소속대학 행정팀에 출력물과 관련 서류를 제출
6. 행정팀에서 전산 승인 처리
7. 처리 절차 완료

제출 서류

1. 자퇴원서 : 전산 신청후 출력
2. 보호자인감증명서
3. 보호자 성명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
4. [등록금환불](#)을 위한 입금계좌 사본 (해당자에 한함)

자퇴자의 재입학

- 기본적으로 가능
- 단, 최소 1학기 이상의 성적 보유 필요
 - 즉,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자퇴했다면 재입학 불가